VERTHILL

인천 영종하늘도시 A25BL 대성베르힐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내 A25BL
■ 공급대상 : 전용면적 84.6853㎡(84A), 84.7341㎡(84B), 84.3391㎡(84C), 84.1579㎡(84D), 84.6853㎡(84AP) 분양주택 1,224세대

– 인천 영종하늘도시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032-564-2000),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사전관람 예약자, 당첨자(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체결시)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 및 공급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및 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 신청인 외 1인, 총 2명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A25블록 대성베르힐 주요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주택법」제2조 등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민간분양]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 제1지역)	재당첨 제한 10년	공급세대수의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공급

■ **사업명 : 인천 영종하늘도시 A25블록 대성베르힐**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9-1번지(영종 A25블록)**
■ **공급대상 : 총1,224세대 [전용면적 84㎡ : 1,224세대]**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1.11.26(금)	2021.12.06(월)	2021.12.07(화)	2021.12.08(수)	2021.12.15(수)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2021.12.16(목) ~ 2021.12.25(토)	2021.12.27(월) ~ 2022.01.05(수)
방법	분양홈페이지 등 게재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견본주택 방문 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견본주택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시간	–	09:00 ~ 17:30	09:00 ~ 17:30		–	10:00~17:00	10:00~17:00
장소	• 분양홈페이지 (http://yjd-verthill.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 별도통지 예정. ※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http://yjd-verthill.com)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 홈페이지(http://yjd-verthill.com)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 ※ 일반인 입장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6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중구)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주택소유 구분)	비고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 세대주만 청약가능. • 청약자 및 그 세대원은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Home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1순위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단지는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고 다른 단지의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단지에 청약자 본인은 특별공급, 배우자는 1순위 당첨자인 경우 청약자 본인만 당첨자로 인정되며, 배우자는 부적격(재당첨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거 공급질서 교란자는 주택형에 관계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및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역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의 일반공급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청약자가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1순위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단지는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8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제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11.16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85㎡이하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20%, 민간택지는 10%)이 적용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는 불인정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필요	–
소득기준	–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아파트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의 순위로 청약가능,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yjd-verthi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으로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동·호수 배정이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첨된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선정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당첨은 인정되며 다른 주택 당첨은 무효(부적격)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하층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자 중 최하층 주택에 희망하는 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최하층 주택(해당 호별)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비교 위를 주택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 희망자 중 해당 순위 및 청약경쟁에 따라 일부 미신청(청약 비당첨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권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사고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 및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에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보증채권자가 …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IX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인천영종피에프브이	200111-0635032
	대성건설㈜	200111-0051444
	대성베르힐건설㈜	200111-0144968
	누비건설㈜	200111-0631709
	경운건설㈜	200111-0631692
	자강건설㈜	200111-0631668
시공회사	디에스종합건설(주)	200111-0351802
	대성베르힐건설㈜	200111-0144968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 : www.yjd-verthill.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
※ **분양문의 : 032-564-20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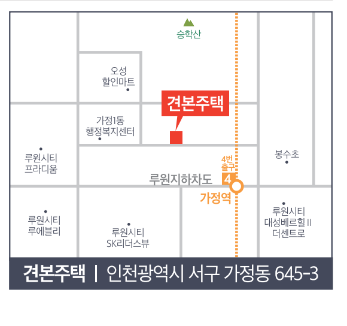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문의 032) 564-2000

전세대 84㎡(A·B·C·D·AP) 총 1,224세대